

의안번호	2125531
의 퇴 인	김영선의원
회 답 일	2023.11.28.
추계번호	23E48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 채납액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9조의10(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소액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 - 대상: 신청일 직전 3년 월평균 수입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무재산인 자 - 소액 체납액: 5년간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0조의2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부과됨으로써 재창업 및 취업 후 가중되는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된 국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 1] 현행법 제99조의10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영세개인사업자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폐업 및 재기	2022.12.31. 이전 폐업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① 사업을 개시하고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또는 ②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선의의 체납	5년 이내 조세범으로서 처벌·처분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고 신청일 현재 진행 중인 조세범칙조사가 없는 사람
소액 체납자	가산세만 면제되는 점, 체납액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가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액 체납자로 한정
체납액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중복적용 금지	기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을 받은 경우 제외
특례 내용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체납액에 대한 최대 5년 이내 분납 허가
신청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례 취소	기준일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당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체납액 징수특례 취소하고 강제징수

□ 동 특례의 전신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로 2008년 말 경제위기 등 경기불황으로 인해 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영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천만원을 한도로 체납액을 소멸해주던 제도로써, 2010년부터 2019년까지¹⁾ 시행되었음

□ 개정안은 현행 징수특례의 전신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와 유사하게 영세개인사업자의 소액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하려는 것으로서 그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대상: 신청일 직전 3년 월평균 수입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무재산인 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는 다음과 같음

[표 2]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최저생계비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2010년 1월 1일 제도 신설 후 2014년 말에 폐지되었다가 2017년 12월 19일에 재시행되었음

- 소액 체납액: 5년간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임
- 개정안에 따라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경우, 소득세수 및 부가가치세수 등의 감소가 예상됨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세수 추계를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영세개인사업자 및 이들의 체납액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 해당 자료의 부재로 추계가 불가능함

Ⅲ. 부대의견

- 동 법률안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소액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이라는 개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내용이 일부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舊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835호)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참조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어수진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어수진	02-6788-4745	sjeo1993@assembly.go.kr